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공금예금통장 이자발생분 세입 미처리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○○과, ◆◆◆◆◆과, ■■■■■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○○과, ◆◆◆◆◆과, ■■■■■과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입·세출예산을 편성·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지방회계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○○과 및 3개 부서에서는 ○○○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발생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각 4,101,501원, 338,859원, 578,569원을 발생 연도에 세입 처리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과장은

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총 4,101,501원을 세입 조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

◆◆◆◆과장은

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중 퇴직급 지급 잔여액 338,859원을 세입 조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)

■■■■과장은

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총 578,569원을 세입 조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